

종합감사

감사결과 처분요구서

— 2021년 군위군 경상북도종합감사 —

2021. 6.



1. 행정상 일람표

(단위 : 천 원)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계			22건	7	15	3	20,074	0	0	1	2,100
1	●●●●●●●●	♠♠♠♠♠♠사업 계약방법 부적정 등 회계질서 문란	-	1	-	-	-	-	-	-	-
2	○ ○ 과	직렬조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	-	1	-	-	-	-	-	-	-
3	◆ ◆ 과 □ □ □ □ 과	공정의무 및 배 녹화장 개발행위 협의 관련	-	1	-	-	-	-	-	-	-
4	■ ■ ■	특정모델의 규격을 명시한 입찰에 관한 사항	-	1	-	-	-	-	-	-	-
5	●●●●●●●●	물품제작 계약에 관한 사항	-	1	-	-	-	-	-	-	-
6	△ △ 과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	1	-	-	-	-	-	-	-
7	△ △ 과	물품구매 및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	1	-	-	-	-	-	-	-
8	△ △ 과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	1	-	-	-	-	-	-	-
9	▲ ▲ ▲ ▲ 실	●○○리경로당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	-	1	-	-	-	-	-	-	-
10	▽ ▽ ▽ ▽ 과	☆☆☆☆☆ 운수사업 재정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	1	-	-	-	-	-	-	-
11	▼ ▼ 과	민간위탁사업 과업지시 불이행	1	-	1	2,688	-	-	-	-	-
12	◁ ▷ 과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등에 관한 사항	1	-	-	-	-	-	-	-	-
13	◀◀◀◀◀◀ 과 ▼▼▼▼▼▼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공장설립등 승인 부적정	-	1	-	-	-	-	-	-	-
14	▷ ▷ 면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1	-	1	3,181	-	-	-	-	-

번호	소관	건명	행정상 조치		재정상 조치					
			시정	주의	회수	금액	감액	금액	추징	금액
15	◆ ◆ 과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	1	-	-	-	-	-	-
16	◆ ◆ 과 ▶ ▶ 읍	농업법인 사업범위 외 사업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 소홀	1	-	-	-	-	-	-	-
17	▽ ▽ ▽ ▽ 과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	1	-	-	-	-	-	1	2,100
18	♠ ♠ ♠ ♠ 과	▲▲▲▲▲공사 주요구조물 시공 부적정	1	-	-	-	-	-	-	-
19	▽ ▽ ▽ ▽ 과 □ □ □ □ 과	토지 보상 업무 추진 부적정	1	-	1	14,205	-	-	-	-
20	♠ ♠ ♠ ♠ 과	군위군 ▲▲▲▲▲ 조성사업 성토재료 반입 부적정	-	1	-	-	-	-	-	-
21	◆ ◆ 과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부적정	-	1	-	-	-	-	-	-
22	△ △ 과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	1	-	-	-	-	-	-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사업 계약방법 부적정 등 회계질서 문란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위군 ●●●●●●●● ◎◎◎◎과에서는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으로 “♠♠♠♠♠♠사업”을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표 1]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1] ♠♠♠♠♠♠사업 추진현황

(단위 : 천 원)

사 업 명	세부사업명	합 계	연도별 예산편성 금액			예산편성및 지출통계목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	네트워크구축	27,000	10,000	11,000	6,000	시설비 401-01
	가공상품개발	60,000	60,000			
	주민교육	82,000	38,000	24,000	20,000	
	체험프로그램	80,000	20,000	40,000	20,000	
	축제지원	40,000		20,000	20,000	
	홍보마케팅	100,000		50,000	50,000	
	컨설팅	60,000	40,000	10,000	10,000	
	합 계	449,000	168,000	155,000	126,000	

1.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등을 사유로 한 장기계속용역계약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7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르면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해당 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공사·제조 또는 용역 등의 계약은 총액으로 입찰하여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낙찰된 금액에 대하여 연차별로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에 따르면 운송·보관·시험·조사·연구·측량·시설관리 등의 용역계약 또는 임차계약을 「지방계약법」 제24조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단가에 대한 계약으로 체결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상기 사업이 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용역 계약에 해당되는지를 먼저 검토한 후,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장기계속(용역)계약으로 추진하지 않아야 했고,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위군수의 승인(결재)을 받은 후에 장기계속계약으로 용역을 발주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이행에 수년이 걸리지 않는 행사성·단년도·일회성 등의 사업비임에도 2018년~2020년도 사업비 총액 449,000천 원을 도금액으로 하여 부당하게 장기계속계약으로 체결하도록(내부품의 등) 하였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8조에 의하여 군위군수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법하게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하도록 한 사실이 있다.

[표 2] 장기계속계약(용역) 체결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시행품의 (내부결재)	장기계속계약 체결 일자	총 용역 부기금액	2018년도분 계약금액	2019~ 2020년도분 계약금액	금차 (2018년도) 완수일자	총 완수일자	계 약 업체명
2018.6.8. (●●●●●● - 3491호)	2018.9.18	404,000	151,161	252,839	2018.12.31	2020.12.31	(주)♪♪♪ ♪♪

그 결과 2019~2020년도 사업비에 해당하는 281,000천 원을 일반경쟁계약의 절차를 거칠 수 없도록 하여 타 경쟁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일실되게 하였고, (주)♪♪♪♪♪에 대하여는 252,839천원의 특혜성 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예산편성 및 집행(지출) 부적정 등

「지방재정법」 제3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편성을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세입·세출의 항목이 구체적으로 명시되도록 예산을 계상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에 따르면 세출예산의 과목은 그 기능을 고려하여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의 과목구분과 설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 훈령 제2호) 제6조 제2항에 따르면 세출예산 과목구분과 세출예산의 성질별 분류는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분류하며 세부분류 내용은 [별표 11]에 따라서 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기준 제8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예산의 운영관리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사업”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방재정법 등 관련규정에 맞게 세출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 4]와 같이 사업 내용에 따라 용역비, 직접수행이 가능한 현장견학 등은 행사운영비 등으로 사업추진 내용에 따라 세출예산을 편성 및 집행(지출)하지 않고 시설비(401-01)로 세출예산을 편성하여 용역비로 계약을 통해 세출예산을 집행하는 등 회계질서를 문란시켰다.

[표 4] ♠♠♠♠♠사업 세출예산 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사업명	세부사업명	합계	연도별 예산편성 금액			예산편성 및 지출과목 (통계목)
			2018년도	2019년도	2020년도	
♠♠♠♠♠사업	네트워크구축	27,000	10,000	11,000	6,000	시설비 401-01
	가공상품개발	60,000	60,000			
	주민교육	82,000	38,000	24,000	20,000	
	체험프로그램	80,000	20,000	40,000	20,000	
	축제지원	40,000		20,000	20,000	
	홍보마케팅	100,000		50,000	50,000	
	컨설팅	60,000	40,000	10,000	10,000	
	합계	449,000	168,000	155,000	126,000	

조치할 사항 균위균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직렬조정 등 인사운영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2017. 9. 27.부터 2021. 3. 22. 감사일 현재까지 퇴직, 승진후속 등 결원에 대하여 승진대상 직급을 임용권자가 결정하고 인사위원회에 심사 요청하여 승진자를 결정하고 있다.

「지방공무원법」 제8조, 「지방공무원법」 제39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8조의2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의 승진임용 기준은 인사위원회에 사전의결 하도록 되어 있고, 보직관리 기준 및 승진·전보임용 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기준은 그 변경일의 1년 후부터 적용하도록 되어 있으며, 5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같은 직렬의 바로 하급 공무원 중에서 임용하되 임용하려는 결원에 대하여 승진후보자 명부의 높은 순위에 있는 사람부터 차례로 배수 범위에서 임용하여야 하며, 승진임용 할 때에는 해당 인사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공무원법」 제10조 및 「지방공무원임용령」 제9조의4에 따르면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경미한 경우(①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②자진퇴직 및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③인사·조직·처우 등 각종 근무조건과 그밖의 신상문제와 관련된 고충심사 ④수습직원의 수습근무기간 종료 후의 임용 ⑤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심의 ⑥민간 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연장 승인 ⑦우대승진임용 및 근속승진임용 ⑧ 명예 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⑨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를 제외한 사항은 3분의 2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다.

[표 1] 공로연수 및 승진 후속 등에 따른 직렬조정 현황

승진심사일	승진임용일	조정전 직급	조정후 직급	조정내역	조정방법
2017.09.27.	2018.02.24.	◆◆5급	■ ■5급	◆◆→■ ■	집행부 내부결재
2017.12.27.	2018.01.01.	△△6급	◆◆6급	△△→◆◆	
		◆◆6급	▲▲6급	◆◆→▲▲	
2018.02.27.	2018.03.01.	■ ■6급	□□□□6급	■ ■→□□□□	
2018.06.26.	2018.07.01.	◆◆6급	▲▲6급	◆◆→▲▲	
		◆◆6급	▽▽6급	◆◆→▽▽	
		▽▽7급	◆◆7급	▽▽→◆◆	
2018.08.28.	2018.09.01.	◆◆6급	▼▼▼▼6급	◆◆→▼▼▼▼	
		◆◆6급(2)	△△6급(2)	◆◆→△△	
		◆◆8급(2)	▼▼▼▼8급(2)	◆◆→▼▼▼▼	
2018.12.28.	2019.07.01.	◆◆5급	▽▽5급	◆◆→▽▽	
2019.03.05.	2019.03.06.	■ ■6급	◆◆6급	■ ■→◆◆	
		◁◁6급	◆◆6급	◁◁→◆◆	
		◆◆6급	▼▼▼▼6급	◆◆→▼▼▼▼	
		▲▲7급	■ ■7급	▲▲→■ ■	
2019.12.30.	2020.01.01.	◆◆6급	■ ■6급	◆◆→■ ■	
		◆◆7급	■ ■7급	◆◆→■ ■	
2020.06.29.	2020.07.01.	◀◀◀◀6급	◆◆6급	◀◀◀◀→◆◆	
		▽▽6급	◆◆6급	▽▽→◆◆	
		△△6급	◆◆6급	△△→◆◆	
		◆◆6급	▷▷6급	◆◆→▷▷	
		▽▽6급(2)	■ ■6급(2)	▽▽→■ ■	
		◆◆6급	■ ■6급	◆◆→■ ■	
		▷▷7급	◆◆7급	▷▷→◆◆	
		◆◆7급(2)	▽▽7급(2)	◆◆→▽▽	
		◆◆7급	△△7급	◆◆→△△	
		△△7급	◀◀◀◀7급	△△→◀◀◀◀	
2020.10.14.	2021.01.01.	▽▽8급	◆◆8급	▽▽→◆◆	
		△△5급	▽▽5급	△△→▽▽	
2020.12.29.	2021.01.01.	◆◆5급	▶▶5급	◆◆→▶▶	
		▷▷6급	◆◆6급	▷▷→◆◆	
		△△6급	◆◆6급	△△→◆◆	
		▶▶6급	◆◆6급	▶▶→◆◆	
		◆◆6급	▼▼▼▼6급	◆◆→▼▼▼▼	
		◀◀◀◀6급	△△6급	◀◀◀◀→△△	
		◆◆6급	■ ■6급	◆◆→■ ■	
◆◆8급	▼▼▼▼8급	◆◆→▼▼▼▼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2017. 9. 27.부터 2020. 12. 29.까지 11회의 인사에서 [표 1]과 같이 37여개의 직렬을 조정하며 인사요인 및 기준을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사전 의결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2017. 9. 27.부터 2020. 12. 29. 까지 인사요인 및 기준을 [표1]과 같이 37개의 직렬을 직렬조정하며 인사 위원회의 사전의결을 받지 않고 임용권자가 결정하여 직렬을 조정하였다.

[표 2] 복수직이 없는 ▲▲7급을 ■■7급으로 직렬조정 방법

연번	복수정원(현원직렬)	조정전 정원	조정전 현원	조정후 정원	조정후 현원	비고
1	▲▲7급+◆◆7급(▲▲)	7	7	6	6	
2	▲▲7급+◆◆7급(◆◆)	29	30	29	30	
3	◆◆7급+■■7급(■■)	15	15	16	15	

※ 2번 ◆◆7급 정원을 3번 ■■정원으로 조정시 ◆◆7급 과원발생으로 조정 불가함

그 결과 2019. 3. 5. 승진심사대상 직렬을 임용권자가 결정하며 2019. 1. 1. 승진한 ▲▲6급 AAA(▲▲7급 → ▲▲6급 근속승진)의 ◆◆5급 승진에 따른 ▲▲7급 결원에 대하여 ▲▲8급 BBB(■■8급 CCC과 현직급 및 총경력 동일)을 승진 임용하지 않고 ▲▲7급과 ■■7급 복수직 정원이 없음에도 [표 2]의 방법으로 임용권자가 ■■7급으로 직렬 조정하여 ■■8급 CCC을 승진 임용하였다.

조치할 사항 균위균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정의무 및 벼 녹화장 개발행위 협의 관련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2021년 식량대책분야 지원사업 벼 녹화장 설치 지원 보조사업자를 선정하고 관련 보조사업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보조사업자 선정 공정의무 관련

「지방공무원법」 제48조, 제51조 및 「군위군 공무원 행동강령」 제6조에 따르면 모든 공무원은 법규를 준수하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고,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직무를 수행할 때 지연·혈연·학연·종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경상북도 및 군위군 2021년 「벼 육묘 녹화장 설치지원 사업시행지침」에 따르면 벼녹화장설치 대규모 2개소, 소규모 2개소 총4개소를 설치 지원하기로 되어 있고, 필요시 녹화장 설치 토지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신청, 농지전용 등의 사전절차를 확인 및 이행하도록 하고 있으며, 군위군 2021년 「벼육묘 녹화장 설치지원 사업 시행지침」 지침에서는 녹화장 설치 농지 지번에 대하여는 개발행위허가, 농지전용 등 설치 가능 여부를 관련부서에 협의 예정이라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2021. 3. 8. 2021년도 식량대책분야 농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때 [표]와 같이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 심의 자료를 제공하며 신청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신청 녹화장 부지의 개발행위허가신청 및

농지전용 등 사전절차를 확인하며 필요시 8명 신청의 녹화장 부지에 대하여 개발행위허가부서 및 농지전용 허가 부서에 확인하여야 했다.

[표]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 심의자료 제공 및 심사표 내용

신 청 자				사업량 (개소)	사업비(천원)			신청대상지 확인	비고
연번	성 명	평가점수	순위		계	보조 (50%)	자부담 (50%)		
1	DDD	71		1	20,000	10,000	10,000	농지(축사)	제외
2	EEE	55		1	11,000	5,500	5,500	잡종지	
3	FFF	95		1	11,000	5,500	5,500	농지(불법건물)	제외
4	GGG	40		1	11,000	5,500	5,500	육묘장 옆	
5	HHH	50		1	11,000	5,500	5,500	육묘장 옆	
6	JJJ	95		1	11,000	5,500	5,500	육묘장 옆	
7	KKK	68		1	11,000	5,500	5,500	빈 농지	
8	LLL	76		1	20,000	10,000	10,000	타인명의	제외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2021. 3. 8. 2021년도 식량대책분야 농정심의 위원회를 개최할 때 [표]와 같이 벼 육묘 녹화장 설치 지원사업 심의자료를 제공하며 신청대상자 확인 과정에서 확인이 필요한 신청자에 대하여 농지전용허가 부서와 협의하여 농지법 위반 여부를 우선 검토하였으며, 농지법 위반 농지를 제외한 위반사항이 있는 신청자에 대하여는 개발행위 가능여부를 전화상 확인하는 등 [표]의 신청자들을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검토하여 ①번 DDD 신청자에게 녹화장 부지에 선정되면 기존 콘크리트를 철거하고 다시 콘크리트 포장 등의 사업을 추진해야 한다고 안내하였으며 DDD 본인도 사업 추진여건에 안 맞으면 사업을 추진할 수 없다며 포기 의사를 비춰서 사업대상자로 부적합하다고 심의 기초자료에 반영하였으며, ②번 EEE 신청자가 2019년 육묘장을 신규설치 하면서 개발행위 및 농지전용 허가를 득하였고 현재 지목이 잡종지로 변경된 토지임을 서류 확인하고, 육묘장 부지내 녹화장 추가 설치는 더이상 인허가를 득할 필요가 없어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심의자료에 반영하였으며, ③번 FFF 신청자의 녹화장 예정 부지를 현장방문시 신청지에 농기계 보관창고 건물이 있고, 창고 건립 시 인허가를 득한 사실이 서류상 없음을 확인하여, 본인과의 전화통화로 불법건축물임을 확인하였고 신청자 본인에게 인허가를 득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안내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청지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없는지 물어보았으며, 신청예정지 바로 옆 필지도 본인이 경작하는 농지이나 임차 농지로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을 징구하여야 하는데, 땅 소유주와 의논해보아야 하고 임차농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의사를 비추었고 다른 사업부지 대안이 없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심의 기초자료에 부적합 대상으로 반영하였으며, ④번 GGG 신청자의 신청지 서류 검토 시 인허가를 득해야 하는 육묘장이 동일필지에 2016년 동 지원사업으로 기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신소재로 육묘장 건립 시 인허가를 득해야 함은 농지법상 확실히 규정되어 있지 않고, 다른 인근 시군에 확인해본 결과 의견이 분분하고 각기 다른 규정을 적용하고 있음을 확인했으며, 그리고 2016년 육묘장 설치 사업 추진 시 담당자가 인허가를 득해야 할 수 있는 사업임을 판단하고 있었는지, 또한 사업 대상자에게 인허가 관련 사실에 대해 고지하였는지에 대한 확인은 불가하였고, 최근 2 ~ 3년 전부터 인허가를 득해야 함(건축부서 2021. 4. 2. 감사일 현재 현장 출장 결과 보고에 따르면 무허가 건축물 임을 확인함)을 건축부서의 판단으로 인지한 상황이므로, 이미 기 지원된 사업에 대하여 적법성을 판단하고 사후조치하기에는 정확한 규정이 없어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고 건축부서 담당자와 사전협의(건축부서 담당자 ***의 진술에 따르면 협의 사실 없다고 진술)시 의견을 모았고, 개발행위 담당자 NNN와 전화 통화로 녹화장 설치 예정지만 필지 분할하여 사업을 추진한다면 개발행위는 가능할 것 같다고 의견을 들었기에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심의 기초자료에 반영하였으며, ⑤번 HHH 신청자는 2020년 동 지원사업으로 육묘장이 설치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인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해본 결과 육묘장 부지는 농지전용신고,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여 적법하게 설치한 사실을 확인하였고 녹화장 설치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심의 기초자료에 반영하였으며, ⑥번 JJJ 신청자는 녹화장 신청예정지에 기존 창고건물이 있어 인허가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개발행위를 득하고 농지전용협의를 마친 농지임을 확인하여 녹화장 설치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심의 기초 자료에 반영 하였으며, ⑦번 KKK 신청자의 신청지는 현장확인 시 빈 농지였고, 기존 육묘장은 비닐하우스 형태로 있어 사전 협의 시 농지전용은 득할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는 가능한 지역이라 확인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대상자에 녹화장 설치도 적법하다고 판단되어 사업대상자로 적합하다고 심의 기초자료에 반영 하였으며, ⑧번 LLL 신청자는 기존 육묘장은 비닐하우스 형태로 위치하고 있어

인허가 사전 협의 시 농지전용은 득할 필요가 없고 개발행위는 가능한 지역이라 확인하였으나, 현장확인 시 농기계 보관창고 건물을 발견하여 본인과 전화통화 중에 무허가로 지어서 농기계 보관용으로 사용 중이라고 확인하였으며, 육묘장 부속시설인 녹화장 건립 시 육묘장 기존 부지에 불법 건축물이 있음을 확인하고도 인허가를 내어주기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된다고 사전협의 검토를 받았으며(건축 부서 사전협의 사실 기억 못함) 신청자 본인에게 인허가를 득하여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임을 안내하고, 불법건축물을 철거하고 신청지에 설치하거나, 아니면 사업을 할 수 있는 다른 부지가 없는지를 물어보았고, 신청 농지도 임차 농지로 10년 이상 임대차계약서를 징구하여야 하는데, 임차농지에 콘크리트 포장을 하기는 부담이 된다는 의사를 비추고 다른 사업부지 대안이 없다고 하여 최종적으로 심의 기초자료에 부적합 대상자로 반영하였다. 하지만 군위군 ◆◆과에서는 해당 신청자 8명의 녹화장 신청부지에 대해 필요시 녹화장 설치토지에 대한 개발행위 허가 신청, 농지전용 등에 대하여 개발행위부서, 농지부서, 건축부서 등 해당부서 모두에 가능여부를 받도록 하여 의견을 공정하게 들어야 함에도 그렇게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2. 벼 녹화장 보조사업자 선정 개발행위 협의 관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제133조 따르면 개발행위 허가 신청이 있을 경우 개발행위허가의 신청 내용이 주변지역의 토지이용실태 또는 토지이용계획, 건축물의 높이, 토지의 경사도, 수목의 상태, 물의 배수, 하천·호소·습지의 배수 등 주변환경이나 경관과 조화를 이룰 경우 등에만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하여야 하며, 개발행위허가 또는 변경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개발행위를 한 자에게 이 법에 따른 허가·인가 등의 취소, 공사의 중지, 공작물 등의 개축 또는 이전, 그밖에 필요한 처분을 하거나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과 벼 육묘 녹화장 설치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 ◆◆과 지방○○주사 MMM으로부터 2021. 2. 26. ~ 2021. 3. 3. MMM의 출장기간 중 전화로 ▷▷면 GGG의 벼 육묘 녹화장 설치사업 보조사업

신청지인 군위군 ▷▷면 ◎◎리 ㄱ번지에 해당필지 내 일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 되어 있으면 원상복구 되지 않으면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없다고 하여야 했다.

그런데 군위군 □□□□과 개발행위허가 담당자인 지방●●주사보 NNN은 ◆◆과 벼 육묘 녹화장 설치사업 보조사업 대상자 선정과정에 ◆◆과 지방○○주사 MMM으로부터 2021. 2. 26. ~ 2021. 3. 3. MMM의 출장기간중 전화로 ▷▷면 GGG의 벼 육묘 녹화장 설치사업 보조사업 신청지인 군위군 ▷▷면 ◎◎리 ㄱ번지의 일부가 무단으로 형질변경되어 있음에도 분필하여 개발행위 신청할 경우 허가 가능한 것으로 협의하여 벼 육묘 녹화장 설치보조사업 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는 ▷▷면 GGG가 부당하게 보조금 대상자로 선정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특정모델의 규격을 명시한 입찰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르면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7.계약담당자 주의사항에 따르면 입찰공고나 설계서(도면·시방서·물량내역서·등에 부당하게 특정 규격·모델 등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계약을 하고 품질·성능 면에서 동등 이상의 물품을 납품하더라도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는 사례는 입찰 및 계약 시 금지해야 할 사항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물품 구매를 위한 입찰공고시 규격서에 특정 모델을 지정하여 입찰에 부치면 아니 된다.

그런데 군위군 ■■■■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 ☆☆☆☆ 구입 전인 2018. 2. 미상일에 대구소재 2개 업체(○○○○○, ●●●●●)로부터 ◇◇◇◇◇사의 ■■■ 모델에 대하여 각각 27백만 원과 27.8백만 원의 견적을 받았고, 그 견적을 근거로 2018. 2. 23. △△과로 계약의뢰 하면서 ■■■ 모델의 사양서를 첨부하여 의뢰하였다.

[표] ☆☆☆☆☆ ☆☆☆☆ 구매 계약체결 현황

시장가격 조사(건적)	계약의뢰	입찰공고	낙찰자 결정일	계약일	계약업체	계약금액 (백만 원)
2018. 2. 중	2018. 2. 23.	2018. 3. 2.	2018. 3. 7.	2018. 3. 15.	○○○○○	27

그 결과 수요사양과 일치하는 ◇◇◇◇◇◇사와 판권 계약된 지역 총판¹⁾의
에는 다른 ●●기기 업체의 입찰은 사실상 제한²⁾되었으며, 해당 입찰에는 2개
업체가 참가하였고, ◇◇◇◇◇◇사의 경북지역 총판인 ○○○○이 2018. 3. 7.
낙찰자로 결정되었다.

조치할 사항 순위순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1) ◇◇◇◇◇◇사와 경북 1개, 대구 1개 업체가 판권 계약되어 있음.(2021. 4. 1. ○○○○ 전화 확인)

2) 2021. 4. 1. 나라장터를 통해 확인되는 경북도내 √√기기 판매업체의 수는 271개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제작 계약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
내 용

군위군 ●●●●●●●● ○○○○과에서는 ◇◇◇◇◇◇ 공급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1. 물품제작 분할 수의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및 제30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5천만 원 이하 2천만 원 초과의 용역·물품은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2인 이상 견적서를 제출받아 예정가격 대비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안전행정부 예규)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용역·물품 계약에 대하여 단일 사업을 부당하게 분할하거나 시기적으로 나누어 체결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군위군 ●●●●●●●●에서는 아래 [표 1]과 같이 2인 전자수의계약으로 진행해야 하는 물품을 추정가격 20백만 원 이하 2건으로 분할하여 ★★★★★ (대구 소재)과 수의계약한 사실이 있다.

[표 1] ▲▲▲ 포장지 제작 수의 계약현황

계약기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계약방법	정당 계약방법
			66		
2019. 2. 15. ~ 2019. 3. 28.	◇◇◇◇◇ 공급 포장지 제작	★★★★★	13	1인 수의계약	2인 전자 수의계약
2019. 2. 18. ~ 2019. 3. 28.	◆◆◆ 공급 포장지 제작	“	20	“	
2020. 2. 14. ~ 2020. 2. 28.	㉮㉮용 ◇◇◇◇◇ 공급 포장지 제작	“	17	“	“
2020. 2. 14. ~ 2020. 2. 28.	㉮㉮용 ◇◇◇◇◇ 공급 포장지 구입	“	16	“	

2. 권한 없는자의 계약에 관한 사항

「지방회계법」 제29 및 제46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지출 원인이 되는 계약이나 그 밖의행위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지출원인행위를 하게 할 수 있으며, 그 위임을 받은 공무원을 재무관이라 지칭하고 있고, 재무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소속 기관에 설치된 직위를 지정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군위군 재무회계 규칙」 제3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르면 본청의 재무관은 부군수, ●●●●●●의 재무관은 ●●●●●●소장으로 두고 있지만, 추정가격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공사·용역·물품의 입찰 및 계약은 본청의 재무관이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위군 ●●●●●●에서는 아래 [표 2]와 같이 4건 57백만원의 ▲▲▲ 공급 포장지 제작사업을 하면서 본청 재무관에게 계약 의뢰 하지 않고, ●●●●●● 재무관이 계약한 사실이 있다.

[표 2] 권한 없는자의 계약 내역

계약기간	계약명	계약업체	계약금액 (천원)	비고
			57	
2018. 1. 18. ~ 2018. 2. 6.	◇◇◇◇◇ 공급 포장지 제작	★★★★★	12	본청 계약 미의뢰
2018. 11. 30. ~ 2018. 12. 7.	◇◇◇◇◇ 공급 포장지 제작	“	12	“
2019. 2. 15. ~ 2019. 3. 28.	◇◇◇◇◇ 공급 포장지 제작	“	13	“
2019. 2. 18. ~ 2019. 3. 28.	◆◆◆ 공급 포장지 제작	“	20	“

조치할 사항 순위순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공사 지연배상금 부과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한 계약상대자에게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는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90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에 따르면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준공기한 안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연배상금률³⁾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성 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⁴⁾한 경우(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기성검사를 거쳐 기성금이 지급된 공사가 준공기한 안에 완성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완성 부분에 상응하는 금액(기성검사 금액의 합계)을 계약금액에서 뺀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했다.

3) 공사의 지연배상금률 : 1000분의 0.5

4)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공사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함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2. 26. [표 1]과 같이 〰〰〰〰 〰〰〰〰 〰〰〰〰 〰〰〰〰 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계약금액에서 기 지급된 금액(선금, 기성금, 노무비)을 모두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 31,734,48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표 1]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산정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계약 상대자	공사명	계약금액	지체 일수	제외대상 금액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기준금액		지연배상금 ⁵⁾		과소부과액 (C=A-B)
				부적정	적정	부적정	적정	부적정(A)	적정(B)	
〰〰〰〰 〰〰〰〰	〰〰〰〰 〰〰〰〰 〰〰〰〰 공사	21,231,540,000	24일	14,712,305,400 (선금+기성금+노무비)	12,069,000,000 (기성검사 금액의 합계)	6,519,234,600	9,162,540,000	78,216,000	109,950,480	31,734,480

2. 지연배상금 부과 일수 산정 부적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에 따르면 준공기한 안에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지만, 준공기한 이후에 시정조치를 한 때에나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준공기한을 지나서 준공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준공기한의 다음날부터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12. 27. [표 2]와 같이 〰〰〰〰 〰〰〰〰〰〰〰〰 〰〰〰〰공사에 대한 지연배상금을 부과하면서, 준공검사에 합격한 날까지가 아닌, 준공신고서 제출일까지의 기간으로 지연배상금을 계산하여 211,250원을 과소 부과하였다.

5) 지연배상금 = 지연배상금 부과대상 금액 × 지연배상금률(0.5/1,000) × 지체일수(24일)

[표 2] 지연배상금 부과일수 산정 부적정 내역

(단위 : 원)

계약 상대자	공사명	계약금액	준공기한	준공신고서 제출일	준공검사일	지연배상금 부과기간		지연배상금		과소부과액 (C=A-B)
						부적정	정당	부적정(A)	적정(B)	
(주)○○ ○○	○○○○ ○○○○ ○○ ○○○공사	140,833,000	'18. 12. 10.	'18. 12. 21.	'18. 12. 24.	'18. 12. 11. ~ '18. 12. 21. (11일간)	'18. 12. 11. ~ '18. 12. 24. (14일간)	774,580	985,830	211,250

조치할 사항 균위균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물품구매 및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물품구매 및 폐기물처리용역 등의 낙찰자 결정을 위한 적격심사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 ◇◇◇◇◇◇ 구입 적격심사 부적정

군위군 △△과에서는 ◇◇◇◇ ◇◇◇◇◇◇ 구입 계약 업무를 [표 1]과 같이 추진 하였다.

[표 1] ◇◇◇◇ ◇◇◇◇◇◇ 구입 계약 현황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천 원)	계약상대자	비고
2019. 4. 30.	2019. 5. 14.	86,625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48호, 2018. 11. 8.)에 따르면 계약 담당자는 재정 지출의 부담이 되는 입찰에서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입찰자의 납품이행능력, 입찰가격, 신인도 등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에 평가한 회사채·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이나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유효기간 안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계약담당자는 제출된 서류의 미비, 오류, 미제출 등으로 인하여 적격통과 점수에 미달되는 적격심사대상자에게 1회에 한하여 7일 이내에 심사서류를 보완·추가 제출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보완·추가 요구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당초 제출된 서류로만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기한 안에 보완·추가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자 및 보완·추가 제출한 후에도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되는 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차순위 입찰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 및 유효기간을 확인하여 유효한 신용평가등급만을 인정하여 평가하여야 했고, 유효하지 않은 경우에는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요구하고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등급으로 평가하여야 했으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의 등급평가일이 입찰공고일(2019. 4. 30.) 이후인 2019. 5. 10.임에도 이에 대한 확인을 소홀히 하고 보완요구 없이 유효한 것으로 평가하여 종합평점 91.24점으로 위 업체를 적격 판정하였다.

한편 위 사실이 감사기간 중 지적되어 계약담당자를 통해 해당 업체에 입찰 공고일 이전에 평가받은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표 2]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72.24점으로 적격 통과점수(85점)에 미달하는 위 업체와 2019. 5. 14.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2] ◇◇◇ ◇◇◇◇◇ 구입 적격심사 결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부적정 평가	적정 평가	비고
계		100	91.24	72.24	
물품납품 이행능력	기술능력	10	5	5	
	경영상태	20	19	0	
입찰가격		70	67.24	67.24	
신 인 도		+2 ~ -2	0	0	
결격사유		-40	0	0	

2. ○○○○○○ ○○○○ ○○○ ○○○ ○○용역 적격심사 부적정

군위군 △△과에서는 ○○○○○○ ○○○○ ○○○ ○○○ ○○용역 계약 업무를 [표 3]과 같이 추진하였다.

[표 3] ○○○○○○ ○○○○ ○○○ ○○○ ○○용역 계약 현황

입찰공고일	계약일	계약금액(천 원)	계약상대자	비고
2019. 12. 2.	2019. 12. 23.	61,777	주식회사 ▼▼▼▼	

「경상북도 일반용역 등 적격심사 세부기준」(경상북도 예규 제1544호, 2018. 12. 13.) 제5조 제1항 제4호 및 제10조 제1항에 따르면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별표 4> “폐기물처리(수집·운반, 처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로 입찰한 자 순으로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기준 제7조 제3항에 따르면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의한 평가방법에 따르며, 이의 세부적용 내용은 <별표 5> “신용평가 등급에 따른 경영상태 평가기준”을 따르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는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③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 구분·기록되어 있고,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에 명시된 평가등급을 적용하여 신용평가등급 평점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적격심사대상자가 제출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평가등급을 확인하여 기준등급에 맞게 평가하여야 했으며,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후순위자에게 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하여 적격심사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주식회사 ▼▼▼▼에 대한 적격심사를 진행하면서 위 업체가 제출한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의 평가등급이 “①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 등급 B0”로 기재되어 있으나, 평가등급 확인을 소홀히 하여 “②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0”로 부당하게 평가하여 종합평점 95점으로 위 업체를 적격 판정하였다.

그 결과 [표 4]와 같이 정당하게 평가할 경우 종합평점이 94점으로 적격통과 점수(95점)에 미달하는 위 업체와 2019. 12. 23. 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4] ○○○○○○ ○○○○ ○○○ ○○○ ○○용역 적격심사 결과

심사분야	심사항목	배점한도	부적정 평가	적정 평가	비고
계		100	95	94	
당해용역 수행능력	이행실적	17	17	17	
	경영상태	10	10	9	
	신 인 도	+5 ~ -5	0	0	
지역업체참여도		3	3	3	
입찰가격		70	65	65	
결격사유		-20	0	0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확인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에 대하여 추정가격 1천만 원 이상의 수의계약을 체결하려면 그 중소기업자의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고, 제품조달계약 전후에 직접생산 여부를 확인하려면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정보에 따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한자와 계약을 체결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인 동영상제작서비스(공공기관 홍보영상에 한함)에 대하여는 그 추정가격이 1천만 원 이상일 경우 구매정보망에 등록된 직접생산확인 조회 등 정보를 확인한 뒤 직접생산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직접생산능력이 없는 사업자와 아래 [표]와 같이 20,460천 원의 부당한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

[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증명 미소지 업체 계약 내역

계약명	업체명	계약일	계약금액(천 원)	비고
◆◆◆◆ 제작	주식회사 ■■■■■	2019. 6. 25.	20,460	

조치할 사항 균위균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리경로당 증축공사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실
내 용

군위군 ▲▲▲▲실에서는 「노인복지법」 및 「군위군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로당의 효율적인 운영과 시설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고 있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별표 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르면 건축물의 주용도별로 의무적으로 준수해야 될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2-아 항목에 따르면 노유자시설(경로당)은 편의시설 설치 대상으로 지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별표 2]-3-나 항목에 따르면 경로당에 매개시설, 내부시설, 위생시설에 대해 편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끝내면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서·설계서 및 그 밖의 관계 서류에 따라 이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 등에게 위임하여 검사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르면 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시정조치를 명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실에서는 노유자시설(경로당)에 대한 증축공사 설계용역에 대한 검사 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하여야 할 장애인 편의시설이 설계도서에 누락되어 있으면 시정조치를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아래 [표]와 같이 ○○○리경로당 증축공사를 추진하면서 관련법에 따른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가 설계 도서에 누락되어 있음에도 시정요구 없이 설계용역을 준공한 사실이 있다.

[표] ○○○리경로당 증축공사 설계용역 현황

(단위 : 천 원)

용역명	위 치	사업량	도금액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경로당 개보수공사 설계용역	○○면 ■■■리 ㄴ번지	실시설계용역 1식	3,300	2019.3.6	2019.3.12~ 2019.3.28	○○○○○○○○○○ (PPP)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 운수사업 재정지원 사후관리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아래 [표 1]와 같이 「군위군 ☆☆☆☆☆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에 따라 ☆☆☆☆☆ 운수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표 1] 운수업계보조금 재정지원 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명	보조사업자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비고
☐☐☐☐☐☐ ☐☐☐☐☐☐	♡♡♡♡(주)	102,518	100,180	102,000	98,082	
☐☐☐☐☐☐ ☐☐☐☐☐☐	"	574,513	592,397	595,306	712,916	
☐☐☐☐☐☐ ☐☐☐☐☐☐	"	21,974	26,622	28,964	29,998	
☐☐☐☐☐☐ ☐☐☐☐☐☐	"	168,242	170,000	170,000	170,000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5장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중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따로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되어 있고,

「지방재정법」 제32조의6(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및 정산)과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장 지방보조금의 회계관리 규정에 따르면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확히 한 계산서를 첨부하여 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 보조금 결제용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을 관련 증빙자료로 첨부하도록 되어 있다.

보조사업명	사업연도	보조금 교부 계좌번호	보조금 정산 계좌번호	정산내역 중 중복내역	비고
☐☐☐☐ ☐☐ ☐☐☐	2017	A	B	-	
	2018	B	좌동	48,017,380원 (☐☐☐☐ ☐☐☐☐☐☐)	8월 급여
	2019			-	
	2020			-	
☐☐☐☐☐ ☐☐☐ ☐☐☐☐☐	2017	-	좌동	-	
	2018				
	2019				
	2020				
☐☐☐☐☐ ☐☐☐ ☐☐☐☐	2017	A	B		
	2018	B	좌동	47,758,480원 (☐☐☐☐☐☐ ☐☐☐☐)	7월 급여
	2018			48,017,380원 (☐☐☐☐☐ ☐☐☐☐☐☐)	8월 급여
	2019			-	
2020	-				

이는 2017년 경상북도의 군위군 종합감사(2017. 10. 18 ~ 10. 27.) 결과 ☐☐☐☐☐ 손실보상 및 재정지원 관리 부적정으로 지적된 보조금 별도계정 미설정에 대한 주의사항으로, 위 부서에서는 감사 결과처분을 받은 2017. 10. 30. 이후 발생 원인을 규명하여 앞으로 동일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체적 점검·관리를 하여야 했으나, 감사일인 2021. 4. 2. 현재까지도 시정·개선 없이 종합감사 이전과 동일하게 운수업계 보조금을 별도계좌로 사용하지 않음에도 ☆☆☆☆☆ 운수사업 재정지원의 사후관리를 부적정하게 하여 보조금 예산 집행의 건전하고 투명한 운용을 저해하는 행정을 반복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민간위탁사업 과업지시 불이행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아래 [표 1]와 같이 「군위군 ■■■■■ 관리 및 운영 조례」에 따라 “■■■ ■■■■■”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재정지원을 하고 있다.

[표 1] 위탁금 교부내역

(단위 : 천 원)

사업명	사 업 비	보조사업자	사업내용	비고
2020 ■■■■■ ■■■■■ 민간위탁	49,500	(주)♣♣♣♣	시설물 유지관리 및 수목관리 등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세출예산 집행기준(정당한 채권자 이외의 예산집행 금지) 및 민간위탁금 집행기준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을 집행하는 경우 관련 법령·조례·규칙·예규 등으로 기준과 절차를 정한 경우 그 절차와 기준을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을 집행하여야 하며 민간위탁사업비의 청소 등 단순노무용역 시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에 의거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 지급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르면 지방용역 계약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검사 또는 검사조서를 작성한 후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2020년도 ■■■■■ ■■■■■ 시설관리 민간위탁용역 과업지시서”에 따르면 용역의 관리는 근로안전관리규정, 보건관리규정 및 산재보험 기타 관계 법률에 따라 행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 □□□□”의 위탁사업비 중 근로자 노무비를 지급하기 위하여는 위탁사업자의 위탁비 지급 청구가 근로계약서에 따라 매월 인건비가 적정하게 지급되는지와 산재보험 등 관계 법률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⁶⁾가 제대로 납부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 여부를 검사를 한 후 위탁금을 지급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보조사업자가 위탁대금 청구시 노무비가 [표 2]와 같이 매월 지출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지 않았으며,

[표 2] 인건비 집행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입금일자	입금금액	입금방법	비고
1월 인건비(QQQ, RRR)	20.02.11.	2,300,000	계좌이체	근로계약 체결시 임금지급(매월), 입금방법(계좌입금) 으로 함
2월 인건비(QQQ, RRR)	20.03.06.	2,300,000	계좌이체	
3월 인건비(QQQ, RRR)	20.04.06.	2,300,000	계좌이체	
4월 인건비(QQQ, RRR)	20.04.24.	2,300,000	계좌이체	
5월 인건비(QQQ, RRR)	20.06.26.	4,600,000	계좌이체	
6월 인건비(QQQ, RRR)				
7월 인건비(QQQ, RRR)	20.11.09.	9,200,000	계좌이체	
8월 인건비(QQQ, RRR)				
9월 인건비(QQQ, RRR)				
10월 인건비(QQQ, RRR)				
11월 인건비(QQQ, RRR)	20.12.01.	4,600,000	현금	
12월 인건비(QQQ, RRR)				

근로자 노무비로 4대 사회보험료를 가입·납부하였는지를 확인하지 않아 아래 [표 3]과 같이 보조사업자가 계약한 근로자의 국민건강보험과 국민연금보험이 가입되지 않은 청구서를 제출받고도, 시정 없이 승인하여 과업지시와 다르게 근로자의 보험료 납부로 지출되어야 하는 예산을 근로자 노무비 등으로 과다하게

6) 1.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료
 2.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보험료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산업재해보험료
 4. 「고용보험법」에 따른 고용보험료

지출하였는데도, 어떠한 조치 없이 정산 확정 하는 등 군위군 □□□ □□□□ 위탁사업 관리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3]보험료 미공제 내역

(단위 : 원)

사업비			보험료 미공제 내역					사업자 보험료 미공제 내역	비 고
민간위탁금 (정산금액)	노무비 정산금액	상시근로자	계	건강 보험	연금 보험	산업 재해 보험	고용 보험		
계	27,600,000	2명	1,344,190	772,030	572,160	-	-	1,344,190	
49,500,000	18,000,000	QQQ	873,720	371,900	501,820	- (납부)	- (납부)	873,720	
	9,600,000	RRR	470,470	200,260	270,210	- (납부)	- (납부)	470,470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과도하게 지급된 인건비 2,688천 원을 환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검사 등에 관한 사항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1.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미실시 업체 조치 미이행

[표 1]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검사내용	검사대상수	검사 실시	검사주기 경과 후 검사	검사 미실시	비고
계		75	42	5	4	24
2018년	토양오염도검사	8	8	-	-	
	누출검사	2	-	2	-	
2019년	토양오염도검사	22	18	2	2	
	누출검사	1	1	-	-	
2020년	토양오염도검사	14	11	1	2	
	누출검사	1	1	-	-	
2021년	토양오염도검사	23	3	-	-	20개소 기간 미도래
	누출검사	4	-	-	-	4개소 기간 미도래

※ 군위군 제출자료 재구성

「토양환경보전법」 제13조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위 [표 1]과 같이 토양오염도검사와 누출검사를 검사주기 내 미 실시하였거나 검사주기를 경과하여 검사를 한 9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업무를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그리고 ■■■■■(2015년 대상)와 ■■■■■(2017년 대상)는 2015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누출검사를 받지 않은 채 영업을 영위하고 있다.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 시 검사 미실시 업체 조치 부적정

[표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 신고 시 토양오염도검사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변경신고	변경일 전 검사완료	검사 미실시	비고
총 계	17	15	2	
2018년	6	5	1	
2019년	4	4	-	
2020년	5	4	1	
2021년	2	2	-	

※ 군위군 제출자료 재구성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르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는 폐쇄·양도·임대 변경 등에 신고⁷⁾ 전에 토양관련전문기관으로부터 토양오염도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 제4조에 따르면 변경신고서를 수리하기 전에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자가 토양오염검사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도록 되어 있다.

- 7) 1.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의 사용을 종료하거나 이를 폐쇄할 경우에는 사용종료일 또는 폐쇄일 3개월 전부터 사용종료일 전일 또는 폐쇄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2.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양도·임대 등으로 인하여 그 시설의 운영자가 달라지는 경우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의 설치자가 그 시설을 교체하거나 그 시설에 저장하는 토양오염물질의 종류를 변경할 경우에는 교체 또는 변경일 3개월 전부터 교체 또는 변경일 전일까지의 기간 동안에 토양오염도검사를 받을 것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특정토양 오염관리대상시설 변경신고를 수리해야 함에도 위 [표 2]와 같이 변경신고 시 토양오염도 검사 결과를 확인하지 않고 2개 업체에 대한 변경신고를 수리하였고, 검사를 미실시한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등 적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은 사실이 있다.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정기점검 소홀

군위군 <<<<과에서는 아래 [표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과 같이 주유소 등 총 40개소를 대상으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로 관리·운영하고 있다.

[표 3]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계	주유소	아스콘 및 레미콘 제조업	유독물	기타
총 계	171	134	16	-	21
2018년	47	39	4	-	4
2019년	44	35	4	-	5
2020년	40	30	4	-	6
2021년	40	30	4	-	6

※ 군위군 제출자료 재구성

「토양환경보전법」 제26조의2에 따르면 군수는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특정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출입하여 토양오염방지시설의 설치, 토양 오염검사 및 그 결과의 보존 여부 등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또한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관리지침(환경부예규 제670호, 2020. 3. 4.)」 “제4장 관리대상시설의 점검”에 따르면 군수는 매년 2월 말까지 관할 관리대상 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점검⁸⁾을 실시하여 관리대상

8) 등급은 아래 기준에 따라 우수, 일반, 중점으로 나누고 각각 1회/2년, 1회/1년, 상하반기 각1회/1년 점검하여야 하며 관리등급상향조정은 해당등급에 속하게 된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여야 하며 등급조정은 직상위 등급으로 단계적으로 상향할 수 있다.

시설 설치(변경)신고 준수 여부, 토양오염방지시설 설치 및 적정관리 여부, 토양 오염검사의 적정 실시 여부, 토양오염물질 저장·취급·사용시설의 오염물질 적정 관리 여부 등을 확인하고 법령 위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그 점검실적을 익년도 1월말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2018년부터 감사일 현재까지 아래 [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현황”과 같이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에 대한 연간 점검계획을 단 한 차례도 수립하지 않았고, 2019년만 일부 시설에 대하여 정기점검을 하고 2018년·2020년에는 단 한 차례도 정기점검을 하지 않아 토양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성 위해를 예방하는데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4]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점검 현황

(단위 : 개소)

구분	기준	연도별 점검 현황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특정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계획수립	매년 2월까지 수립	-	-	-	-
정기점검	1회/2년~2회/년	-	18	-	-
결과보고	매년 1월말까지 제출	-	18	-	-

※ 군위군 제출자료 재구성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토양오염도검사 및 누출검사 미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법에 따라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시정)

가. 우수관리 : 최근 2년간의 지도·점검결과 위반이 없었던 사업장 및 시설

나. 일반관리 : 우수관리 및 중점관리 등급을 제외한 나머지 사업장 및 시설

다. 중점관리 : 토양오염검사 부적합 사업장 및 시설, 토양오염사고 사업장 및 시설,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른 행정명령 불이행 사업장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공장설립등 승인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 ▼▼과
내 용

1. 상수원보호구역 상류 공장설립승인지역 내 공장설립등 승인 관련 협의회신 부적정

군위군 ◀◀◀◀◀◀에서는 「수도법」 제7조의2에 따라 상수원보호구역 외의 지역에서의 공장설립의 제한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수도법」 제7조의2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따르면 상수원 보호구역의 상류지역 윗하거리 10km이내 지역에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공장⁹⁾을 설립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르면 공장설립승인지역의 범위는 제14조의2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지역 중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윗하거리 7킬로미터를 초과하는 지역이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정한 공장의 승인요건¹⁰⁾을 충족할 경우

9)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는 "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제조업을 하기 위한 사업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에는 제조업의 범위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제조업으로 규정

10) 「수도법 시행령」 제14조의3제1호의 지역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물환경보전법」 제2조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같은 법 제32조제7항제2호에 따른 폐수를 전량(全量) 위탁처리하여 공공수역으로 폐수를 방류하지 아니하는 배출시설과 같은 법 제33조제7항에 따라 설치되는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은 제외한다)을 설치하는 사업장 또는 「화학물질관리법」 제28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장은 제외한다.

공장설립이 가능하다.

따라서 상수원 수질보존을 위해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7km를 초과하는 지역의 공장설립등의 신청이 있을 경우 「수도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승인요건을 면밀히 검토하여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한편 ◀◀◀◀◀◀에서는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 관련법 검토 의뢰 공문을 ▼▼과로부터 접수(-75148, 2020. 6. 25.)한 후 검토의견을 회신함에 있어 ■■■■ 주식회사11)가 「물환경보전법」 제2조 제10호의 폐수배출시설 설치사업장인지를 면밀히 확인한 후에 공장설립승인지역에서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회신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당시 신청서 배출시설 명세에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부분이 전혀 기재되어 있지 않았고, 생활·공업용수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어, 이를 근거로 폐수배출시설이 없다고 판단하고 폐수배출시설에 대한 보완요청 등에 충분한 확인 절차 없이 아래 [표 1]과 같이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준수사항만을 충족하면 공장설립이 가능하다는 검토 의견을 회신하였다.

가.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의 하수처리구역에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발생하는 오수를 전량 같은 법 제2조제9호의 공공하수처리시설로 유입·처리하는 공장

나.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또는 수질개선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하는 지역에서 설립되는 공장으로서 「하수도법 시행규칙」 별표 3 개인하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 중 1일 처리용량이 50세제곱미터 이상인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수질기준이 계속하여 유지될 수 있다고 인정하는 공장

다. 취수시설의 취수방법이 강변여과수인 지역에 설립되는 공장

라. 1일 오수 발생량이 10세제곱미터 미만인 공장

11) 합성수지 및 기타 플라스틱 물질제조시설로 폐수배출량은 5m³/일이며 폐수는 전량 재이용(저장조 : 6.2m³)하는 공장임

[표 1] 수도법 검토 회신내용

검토부서	검토항목	검토의견
◀◀◀◀◀◀	수도법	1. 「수도법」 제7조에 따른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니며, 동법 제7조의2 및 시행령 제14조의3 제1호에 따른 공장설립승인지역임 2. 「수도법」 시행규칙 제3조 제1호의 준수사항에 적합하도록 제품의 제조 등의 공정에 사용되는 원료, 첨가물 등이 보관, 이송과정에서 사고로 유출될 수 있으므로 외부유출 차단 및 집수시설을 설치하여 수질사고 발생에 대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 결과 「수도법 시행규칙」 제2조의3에서 정한 공장의 승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공장이 공장설립승인지역에 부적정하게 설립이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2. 공장설립등의 승인 신청 관련 협의회신 절차 미준수로 인한 완료신고 부적정

군위군 ▼▼과에서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 주식회사에서는 2020. 6. 25. 아래 [표 2]와 같이 공장설립등(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을 하였고, 군위군 ▼▼과에서는 신청내용을 검토하고 2020. 8. 21.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를 수리하였다.

[표 2] 공장설립등(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

업체명	대표자	소재지	부지면적(㎡)	제조면적(㎡)	업종	용도	신청일	완료일
■■■■ 주식회사	SSS	○○면 ●●로 ㄷ	2,501	506.25	플라스틱 선, 봉, 관 및 호스 제조업 (22211)	공장	2020. 6. 25.	2020. 8. 2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개발행위허가를 하는 경우로서 그 개발행위의 준공 후 해당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제1항제1호의2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간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조건을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군위군 도시계획 조례」 제18조의2에 따라 개발행위에 대한 군계획위원회 심의 제외 건축물 등¹²⁾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7조 제2항에 따라 용도변경이 있을 경우 군계획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

군위군 ▼▼과에서는 아래 [표 3]과 같이 ■■■■ 주식회사 공장설립등 (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에 대하여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에 따라 2020. 6. 25.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 관련법 검토를 ▼■■■과(현 □□□□과)로 의뢰하였고, ▼■■■과로부터 2020. 6. 29. 아래 [표 3]과 같이 검토의견을 회신받았다.

[표 3]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 신청에 따른 관련법 검토 회신내용

검토부서	검토항목	검토의견
■■■■과 (현 □□□□과)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1. 법률 제76조 및 같은 법률 시행령 제71조, 시행령 별표20의 규정에 의거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2. 법률 제57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있을 시 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과로부터 검토의견 내용에 건축물의 용도 변경이 있을 시에는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는 의견을 받고도, 해당 공장이 용도변경 사항인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하지 않은 채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업체에 통보하였다.

그 결과 공장 제조시설설치 승인 전 거쳐야 할 군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은 공장이 부적정하게 설립 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2) 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의 단독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의 공동주택(「주택법」 제15조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하는 주택은 제외한다), 3.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4.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차목·타목 및 과목의 시설은 제외한다), 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어업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 한정한다)와 같은 표 제21호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다 목 및 라목은 제외한다)로 660제곱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변경으로 한정하며, 자연환경보전지역에 있는 시설은 제외, 6. 기존 부지면적의 100분의 5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하려는 건축물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 및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면
내 용	

군위군 ▷▷면에서는 「농지법」 제8조 등의 규정에 따라 관내에 있는 농지를 취득하려는 자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신청을 접수하고 취득요건에 적합한지를 심사하여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하는 업무와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직불제 신청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1. 농업법인 농지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

「농지취득자격증명발급심사요령」(이하 “예규”라 한다) 제4조, 제5조, 제7조 및 제8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첨부서류 등을 심사 및 현지 확인 등을 통해 적합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되 신청인이 투기 등의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고자 농업경영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자격증명을 발급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되어 있다.

그리고 예규 제8조 제2항 제1호에는 투기 등 매매거래 목적인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농업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 목적이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에서 정한 사업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농지취득 전 법인의 등기사항 변경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다.

한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르면 군수는 영농조합법인이 ①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②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③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④농작업의 대행, ⑤농어촌 관광휴양사업, ⑥그 밖에 영농조합법인의 목적¹³⁾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 등 법률에서 정한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20조의3에 따라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이 농지취득자격증명 발급을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의 사업범위, 농업경영계획서 등의 첨부서류 등을 면밀히 심사 확인하여 투기목적의 농지취득자격증명이 발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위군 ▷▷면에서는 2020년 아래 [표 1]과 같이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한 “□□□□□ 영농조합법인”의 법인 등기사항증명서상에서 “부동산 임대업”이라는 사업범위를 벗어난 목적이 기재되어 있고 법률에서 정한 농업법인 해산 청구 요건을 충족하고 있었음에도 관련서류 심사 업무 등을 소홀히 하여 상기 농업법인에 농지취득자격증명을 발급해주어 부적정하게 농지 7필지 10,144㎡ (영농여건불리농지 3필지 8,648㎡는 제외)를 소유토록 원인을 제공하였다.

[표 1] 농지취득자격증명 부적정 발급 내역

연번	발급 기관	접수 및 발급 일자	신청인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성명	주소	읍면	지번	면적(㎡)		
합계						10필지	18,792		
1	▷▷면	20.6.19. 20.6.22.	□□□ □□ 영농조합 법인	군위군 ■■면 □□로 리	▷▷면 ⓪⓪리	□	2,747	부동산 임대업	
2						ㅂ	871		
3						ㅅ	2,909		
4						ㅈ	552		
5						ㅊ	1,339		
6						ㅋ	744		
7						ㅌ	982		
8		ㅍ	2,185	영농여건 불리농지					

13) 협업적 농업경영을 통하여 생산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함

연번	발급 기관	접수 및 발급 일자	신청인		발급내역			부적정 사업범위	비고
			성명	주소	읍면	지번	면적(m ²)		
9						ㅎ	2,843		영농여건 불리농지
10						ㄱ	3,620		영농여건 불리농지

※ 자료 : 군위군 농업행정 시스템 추출

* 취득목적은 모두 농업경영, ○○○○○○○○○○○○ 사업지(▷▷면 ○○리)로부터 직선거리 5km 이내

2. 농업법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지급 부적정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 제8조, 제9조, 제14조,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 제11조에 따르면 읍·면장은 신규대상자가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이하 “기본직접지불금”이라 한다) 신청서류 등을 제출할 경우, 법률에 정한 지급대상자는 같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등록신청연도의 직전 3년 동안 1년 이상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기본직접지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이하 “지급대상농지등”이라 한다)에서 농업에 종사하는 농업인등(농업법인 포함)으로 한다고 되어 있고,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농업법인인 경우는 논농업 또는 밭농업에 이용하는 농지등의 면적이 5만 제곱미터 이상(휴경하는 농지등은 면적 산정에서 제외한다)이거나 논농업 또는 밭농업을 통해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이 4천500만원 이상을 충족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면에서는 2020. 6. 29. “○○○○○ 영농조합법인”이 신규대상자로 2020년도 기본직접지불금을 신청했을 때는 지급대상농지등에서 직전 3년 기간 동안 중 1년 또는 직전 1년 이상 신청 대상농지를 경작했음을 경작사실 확인서로 확인하여야 했고, 지급대상농지등에서 수확한 농산물의 연간 판매금액 4천500만 원을 추가로 확인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단순히 해당 농업법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¹⁴⁾와 2019년도 전자계산서상 농산물 판매금액¹⁵⁾만을 확인하고 신규대상자로 선정하였다.

그 결과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해당 농업법인이 기본직접지불금 신규대상자로 선정되어 아래 [표 2]와 같이 기본직접지불금을 부적정하게 수령하는 결과를 초래하였고, 신청한 전체 농지 19,962㎡ 중 10,144㎡는 위 1.에 농업법인 농지 취득자격증명 심사 및 발급 부적정으로 취득한 농지이다.

[표 2] 농업법인 기본형공익직접지불금 부적정 지급 내역

연번	등록 기관	신청일	신청인		지급내역			비고
			성명	주소	지급기관	금액(원)	면적(㎡)	
합계						3,181,350	19,962	
1	▷▷면	20.6.29.	○○○○○ 영농조합법인	군위군 ■■■면 □□로 ㄸ	관내 (군위군)	2,976,410	18,792	10필지
2					관외 (●●군)	204,940	1,170	1필지

※ 자료 : Agrix 시스템 추출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정당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농업법인에게 부적정하게 지급된 3,181천 원은 회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4) 농업법인이 제출한 경작사실 확인서에는 직전 1년 이상 신청 대상농지를 경작했음을 확인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15) ◆◆ 판매금액 71,000천원, 지급대상농지등에서 생산된 농산물인지 확인하지 않음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농지전용협의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표]와 같이 2018. 1. 18., 2019. 2. 12. 및 2019. 11. 11. TTT 외 4명에게 군위군 ◐◐면 ◑◑리 ㅁ 일원 농지를 주거시설(단독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농지의 전용을 허가(협의)하였다.

[표] 군위군 ◐◐면 ◑◑리 ㅁ 일원 주거시설(단독주택) 농지전용협의 내역

연번	구분	협의일자	신청인	소재지	면적 (㎡)	용도 지역	전용목적
1	신규	2018. 1. 18.	UUU	◐◐면 ◑◑리 ㅁ	639	보전 관리 지역	주거시설 (단독주택 신축)
2	신규	2018. 1. 18.	VVV	◐◐면 ◑◑리 ㅁ	639		
3	신규	2018. 1. 18.	ZZZ	◐◐면 ◑◑리 ㅁ	828		
4	신규	2018. 1. 18.	TTT(A)	◐◐면 ◑◑리 ㅁ	887		
5	신규	2019. 2. 12.	TTT(B)	◐◐면 ◑◑리 ㅁ	631		
6	신규	2019. 2. 12.	TTT(A)	◐◐면 ◑◑리 ㅁ-ㄱ	673		
7	변경	2019. 11. 11.	ZZZ	◐◐면 ◑◑리 ㅁ-ㄴ	631		
8	변경	2019. 11. 11.	ZZZ	◐◐면 ◑◑리 ㅁ-ㄷ	454		

「농지법」 제37조 제1항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3항 제2호에 따르면 도시지역·계획관리지역 및 개발진흥지구 외 지역에 있는 농지를 단독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호) 부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1,000㎡를 초과하여 농지의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고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령 제44조 제5항에 따르면 전용제한면적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시설을 설치하는 자가 동시 또는 수차에 걸쳐 그 시설이나 그 시설과 같은 종류의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연접하여 농지를 전용하는 경우에는 그 전용하려는 농지의 면적과 그 농지전용허가신청일 이전 5년간 연접하여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해당 시설의 부지면적으로 본다 고 되어 있다.

따라서 동일인이 보전관리지역 내 연접한 농지를 주거시설(단독주택)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전용하려는 경우, 그 전용하려는 농지면적과 5년 이내에 같은 목적으로 전용한 농지면적을 합산한 면적이 1,000㎡를 초과하면 전용허가(협의)를 할 수 없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TTT(A)가 2018. 1. 18. 군위군 ◐◐면 ◑◑리 ㅁ 일원 농지(보전관리지역) 887㎡를 주거시설(단독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받고, 2019. 2. 12. 이와 연접하여 군위군 ◐◐면 ◑◑리 ㅁ-ㄱ 일원 농지(보전관리지역) 673㎡를 주거시설(단독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하고자 농지전용을 신청한 것에 대하여 해당 농지를 합산한 면적이 1,560㎡로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초과하였음에도 농지의 전용을 허가(협의) 하였다.

또한 ZZZ가 2018. 1. 18. 군위군 ◐◐면 ◑◑리 ㅁ 일원 농지(보전관리지역) 828㎡를 주거시설(단독주택 신축) 부지로 사용하기 위하여 농지전용을 받고, 2019. 11. 11. 군위군 ◐◐면 ◑◑리 ㅁ-ㄴ 및 ㅁ-ㄷ 일원 농지(보전관리지역) 1,085㎡를 주거시설(단독주택 신축) 및 진입도로 사용하고자 농지전용 변경허가(협의)를 신청한 것에 대하여 농지전용 제한면적을 초과하였음에도 농지의 전용을 변경허가(협의) 하였다.

그 결과 해당 사업자에게 전용 제한면적을 초과하여 농업 외의 용도로 농지를 사용할 수 있게 하였고, 농지의 보전 및 농업과 국민경제의 조화로운 발전을 저해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농업법인 사업범위 외 사업 경영에 대한 실태조사 소홀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읍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농업법인에 대한 실태조사와 후속조치 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읍에서는 2019. 6. ~ 12. 기간 중, ▶▶읍 소재 46개 농업법인¹⁶⁾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수행하였다.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농어업경영체법) 제16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1항에 따르면 영농조합법인의 사업범위는 농업의 경영 및 그 부대사업, 농업과 관련된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농산물의 공동 출하·유통·가공 및 수출, 농작업의 대행, 농어촌 관광휴양사업, 그 밖에 영농조합 법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법 제20조의2 제1항 및 제20조의3에 따르면 농업법인의 적법한 운영과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3년마다 농업법인의 사업범위와 관련된 사항 등 운영실태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범위에서 벗어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원에 해산을 청구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따라서 농업법인 실태조사 시 해당 영농조합법인이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지 면밀히 확인하고, 부동산임대업 또는 체육시설업 등 영농조합 법인 사업범위 외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법인 해산 청구 등 적정한 행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농어업경영체법」 제2조 제2호 : 농업법인은 영농조합법인과 농업회사법인을 말한다.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자 행정처분 소홀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에 대한 행정처분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4항 및 제84조 제3항 제1호에 따르면 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않은 자동차는 운행하지 못하고, 이를 위반하여 자동차등록번호판을 부착 또는 봉인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 제1항 및 제48조 제3항에 따르면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한 경우에 피해자에게 일정 금액을 지급할 책임지는 책임보험(이하 의무보험)이나 책임공제에 가입하여야 하고,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군위군 ▽▽▽▽과에서는 경찰서로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실을 통보받은 경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여야 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2018. 7. 1. ~ 2020. 12. 31. 기간 중, 군위경찰서 외 3개 경찰서로부터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 사항 11건을 통보받았음에도 [표]와 같이 5건에 대하여 2021. 4. 2. 감사일 현재까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등 행정처분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표] 자동차관리법 및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위반자 행정처분 현황

연번	관련기관 (문서번호)	통지일자 (접수일자)	위반 법령 (위반내용)	행정처분 여부	과태료 산정액(원)	비고
합 계					2,100,000	
1	▣▣▣경찰서 (▣▣과-7160)	2018. 8. 9. (2018. 8. 9.)	자동차관리법 제10조 (등록번호판 미부착 운행)	부	1차 500,000	
2	군위경찰서 (▣▣▣▣▣▣과-5187)	2018. 11. 8. (2018. 11. 8.)	자동차관리법 제48조 (이륜자동차 사용 미신고)	부	1차 500,000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최고 200,000	
3	군위경찰서 (▣▣▣▣▣▣과-1406)	2019. 4. 1. (2019. 4.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부	최고 200,000	
4	군위경찰서 (▣▣▣▣▣▣과-1665)	2019. 4. 12. (2019. 4. 1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 5조 (책임보험 미가입 운행)	부	최고 200,000	
5	군위경찰서 (▣▣과-2137)	2020. 7. 27. (2020. 7. 27.)	자동차관리법 제10조 제5항 (등록번호판 가림 운행)	부	1차 500,000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위반자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 ▲▲공사 주요구조물 시공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 ▲▲공사를 [표]과 같이 (주)▲▲▲▲과 계약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표] 공사 현황

공 사 명	사업량	사업비(백만원)			계약일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 ▲▲공사	하천정비 L=1.68km	1,926	1,316	610	2020. 05.27.	2020.06.30. ~2022.05.23.	(주)▲▲▲▲ AC	

「건설기술 진흥법」 제49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가 설계도서, 계약서, 그 밖의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도록 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및 현장의 안전 등 건설공사를 관리하기 위하여 공사감독자를 선임하도록 되어 있고,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4조, 제138조에 따르면 감독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해당 공사의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그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성실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작업단계별 시공상태의 확인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하천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르면 제방 쌓기에 사용되는 재료의 최대 치수는 100mm 이내로 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 ▲▲공사를 추진하면서 공사 목적물이 적정하게 시공되는지 등에 대하여 확인 하였어야 하나, 감사일 현재(2021. 3. 22. 현장 확인) 제방 쌓기에 부적합한(100mm 이상) 재료로 성토¹⁷⁾하거나, 뒷채움 잡석을 시공¹⁸⁾하지 않은 사실이¹⁹⁾ 확인되었다.

그 결과 상기 공사가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과 상이하게 시공됨으로 인해 1,926백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하천사업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본래의 목적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설계도서·계약서, 그 밖의 관계 서류 등과 상이하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하시기 바라며, 건설사업자, 건설기술인에 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행정처분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17) L=680m - NO.40+0~NO.47+0(L=140m, 좌안), NO.40+0~NO.67+0(L=540m, 우안)

18) L=652m - NO.40+1~NO.47+2(L=141m, 좌안), NO.40+2~NO.47+1(L=139m, 우안), NO.47+8~NO.52+2(L=94m, 우안), NO.52+12~NO.55+15(L=63m, 우안), NO.56+4~NO.66+19(L=215m, 우안)

19) 재시공 비용 42,187천 원 정도 소요(예상)

경 상 북 도

시 정 요 구

제 목 토지 보상 업무 추진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과
 내 용

1. ○○○○ ○○○○○ 개발사업 보상 부적정

군위군 ▽▽▽▽과에서는 ○○○○ ○○○○○ 개발사업²⁰⁾에 대하여 [표 1]과 같이 □□□면 ■■■리 aa번지의 토지 보상을 하면서 잔여지 710㎡(27,641,470원)을 매수하였고, ⊛⊛⊛⊛⊛공사 ○○○○지사와 위·수탁 협약(2013.12.3.)하여 추진하여 ⊛⊛⊛⊛⊛공사에서는 [표 2]와 같이 지장물 135주(22,699,250원)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였다.

[표 1] 잔여지 매수 현황

(단위 : ㎡, 원)

사업명	지번	지목	면적			편입토지 지급금액	잔여지 지급금액	비고
			당초	편입	잔여			
계							51,803,080	
○○○○ ○○○○○ 개발 사업	군위군 □□□면 ■■■리 aa	답	1,716	1,006	710	58,424,210	27,641,470	▽▽▽▽과 (⊛⊛⊛⊛⊛공사 위탁 시행)
●●●●●●●● 진입로 확포장공사	군위군 ♡♡♡면 ♥♥♥리 bb	답	493	101	392	7,104,290	24,161,610	□□□□과 (직접시행)

20) 1. 위 치 : 군위군 □□□면 ■■■리 일원
 2. 수혜면적 : 106.3ha
 3. 사업기간 : 2015년 ~ 2021년(7년간)
 4. 사업내용 : 채당 L=152m, H=20m
 5. 저 수 량 : 503.2㎡
 6. 사 업 비 : 10,151백만원(군특 6,045 군비 3,746)

[표 2] 지장물 보상 지급 현황

(단위 : 주, 원)

지번	지장물 종류	수량			편입 지급금액	사업지구밖 지급금액	소유자	전체 토지 편입면적 비율
		당초	편입	잔여				
계		321	186	135		22,699,250		
군위군 □□□면 ▲▲리 aa 21)	□□나무	120	68	52	11,106,670	8,493,300	AD	2/3이상
군위군 □□□면 ▲▲리 cc	□□나무	101	54	47	9,152,370	7,965,960	BC	2/3미만
군위군 □□□면 ▲▲리 dd	□□나무	100	64	36	11,093,340	6,239,990		

가. 잔여지 매수 부적정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되어 있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한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등 동일한 소유자에 속하는 일단의 토지가 협의에 의하여 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소유자는 잔여지 매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잔여지 매수 기준」(2012년 3월,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 따르면 전·답의 경우 [표 3]과 같이 각 항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잔여지 수용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

21) 잔여지 매수 신청 전 지장물 기 보상

[표 3] 잔여지 매수 기준

- | |
|---|
|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잔여면적이 300㎡ 이하인 토지 2. 농지로서 농기계의 진입과 회전이 곤란할 정도로 폭이 좁고 길게 남거나 부정형 등의 사유로 인하여 영농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잔여지의 형상이 사각형은 폭 5m이하인 경우, 삼각형은 한번의 폭이 11m이하인 경우 등을 부정형으로 보되, 이외의 형상은 잔여지에 내접하는 사각형 또는 삼각형을 도출하여 판단 3. 당해 공익사업 시행으로 인하여 진·출입 또는 용·배수가 차단되어 영농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토지 4. 잔여지의 면적 비중이 공익사업 편입전 전체토지의 면적 대비 25% 이하인 경우²²⁾ |
|---|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공사 ○○○○지사에서 요청한 잔여지 매입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710㎡로 매입 기준면적(300㎡)보다 넘고, 농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지 않으며 최소폭이 5m이상으로 농기구의 회전에도 어려움이 없는 등 영농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데도 군위군의 ▽▽▽▽과에서 구성·운영중인 보상협의회²³⁾ 협의절차 등 아무런 검토없이 ⊛⊛⊛⊛⊛공사 ○○○○지사에서 요청한 잔여지 매수 신청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잔여지 매수 보상비(토지, 영농보상비) 27,641,470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었다.

나. 지장물(□□나무) 보상 부적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79조 제2항에 따르면 공익사업이 시행되는 지역 밖에 있는 토지 등이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인하여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없게 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실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65조에 따르면 경작하고 있는 농지의 3분의 2 이상에 해당되는 면적이 공익사업시행지구 편입됨으로 인하여 당해지역에서 영농을 계속할 수 없게 된 농민에 대하여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에서 그가 경작하고 있는 농지에 대하여도 영농손실액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다.

22) 잔여지 매수기준 등 토지수용 재결 세부기준 마련 연구(국토교통부 중앙토지수용위원회(2019.2.)) 제8조(농지의 판단) 잔여지 비율이 25%이하인 경우에는 면적(300㎡)을 1.5배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고 규정

23) ○○○○ ○○○○ 개발사업 보상협의회 구성·운영(2018.10.4.) 중이며 잔여지의 범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게 되어 있음

한편 군위군 ▽▽▽▽과에서는 공기관 대행사업비를 교부하면서 교부조건에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거나 보조금 교부목적, 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배할 때에는 보조금 교부 결정액의 전액 또는 일부를 취소하고 취소된 부분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 ○○○○○ 개발사업 위수탁 계약서 제12조에 따르면 ⊕⊕ ⊕⊕⊕공사 ○○○○지사에서는 매월 추진상황을 제출 하게 되어 있고 시행 중 중대사안의 발생 및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군위군에게 보고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공사 ○○○○지사에서 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장물(□□나무) 135주에 대하여 보상지급현황 등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 받지 않았으며, ⊕⊕⊕⊕⊕공사에서는 공사차량 진출입, 공사차량의 진동 및 비산먼지 등 □□나무의 생육 및 수확불가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군위군과 협의없이 지장물 보상비를 지급하였다.

이에 감사 기간 현장 확인(2021. 3. 25.) 중 굴삭기를 동원하여 □□나무(135주)를 제거하고 있었고, BC □□나무(83주)는 전지작업 등 관리가 잘 되고 있었으며 생육 및 수확에 지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 결과 ⊕⊕⊕⊕⊕공사에서는 사업추진을 위해서 □□면 ■■리 aa 지번에 대한 영농보상비 3,028,150원²⁴⁾만 지급하여 추진하여야 함에도 지급하지 않아도 될 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장물 보상비 19,671,100원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과에서는 ⊕⊕⊕⊕⊕공사 ○○○○지사에 대해 사업시행지구 밖의 지장물 보상지급 현황 등 추진상황을 보고 받지 않는 등 부당한 보상금 지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사실이 있다.

24) □□면 ■■리 aa번지는 전체 토지 편입면적 비율이 2/3이상의 면적으로 영농손실금 3,028,150원(2019년 m² 당 4,265원 × 710m²) 지급 사유에 해당됨.

2. ●●●●●●●● ●●●●●●●● 진입로 확포장공사 잔여지 매수 부적정

군위군 □□□□과에서는 ●●●●●●●● ●●●●●●●● 진입로 확포장공사를 추진하면서 [표 1]과 같이 ♥♥면 ♥♥리 bb번지의 토지 보상을 하면서 잔여지 392㎡ (24,161,610원)를 매수하였다.

그런데 위 부서에서는 잔여지 매입 토지의 경우 그 면적이 392㎡로 매입 기준 면적(300㎡)보다 넘고 농지의 진출입로가 차단되지 않으며 최소폭이 11m 이상으로 농기구의 회전에도 어려움이 없는 등 영농이 현저하게 곤란한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현장 확인 출장복명서를 통해 잔여지 매수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원해결 등의 사유로 매수하였다.

그 결과 잔여지 매수 보상비(토지, 영농보상비, 지장물) 24,161,610원의 예산이 불필요하게 낭비하게 되었다.

따라서 군위군 ▽▽▽▽과 및 □□□□과에서는 면밀한 검토 없이 보상업무를 추진하여 총 사업비 71,474,180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사업추진에 적정을 기하지 못한 사실이 있다.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라며,(주의)
- ② ⊛⊛⊛⊛⊛공사 ○○○○지사장에게 관련법령에 위배해 지급된 보상비 14,205천 원에 대해서는 반환 등의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시정)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군위군 ▲▲▲▲▲ 조성사업 성토재료 반입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 등 2개과에서는 군위군 ▲▲▲▲▲ 조성사업 사업 등 2개 사업을 아래 [표 1]과 같이 추진하고 있다.

[표 1] 사업 추진 현황

(단위 : 천 원)

공 사 명	사업량	사업비			사업기간	도급자	비고
		계	도급	관급			
군위군 ▲▲▲▲▲ 조성사업 (▶▶음 □□리)	▲▲▲ 및 부대시설 1식	16,620,297	9,550,040	7,070,257	'19.5.30 ~ '22.01.20	(주)▲▲▲▲▲▲▲	진도율 (40%)
▽▽ 하상정비사업	하천준설 V=9,462㎡	100,000	100,000	-	'20.11.20 ~ '21.12.17	⊕⊕⊕⊕(주)	준공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7조에 따르면 발주청은 건설공사에서 발생하는 토석(土石)이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토석을 관리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토석정보공유시스템 이용요령」 제5조에 따르면 발주기관은 실시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1,000㎥ 이상의 사토·순성토 현황을 숙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근 건설공사 현장 등의 토석 자원을 재활용하는 등 예산절감 및 국토환경 훼손 방지에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고, 설계감리시공업체도 토석자원이 효율적으로 재활용하는데 적극 노력하도록 되어 있다.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 추진하는 군위군 ▲▲▲▲▲ 조성사업의 순성토 52,272m³를 반입하면서 [표 2]와 같이 사토·순성토 발생량 1,000m³이상의 2개 사업장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본공사의 순성토에 대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인근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토를 반입하지 않고 운반비 10km를 부담하는 조건으로(실제 45km 정도) 대구광역시 **지구에서 성토재를 반입하였다.

[표 2] 1,000m³이상 사토·순성토 발생 사업장 현황

공 사 명	운반거리* (km)	사토 (m ³)	순성토 (m ³)	운반비 (원)	시스템 등록여부	비고	
계		3,530	52,272	10,500,000			
군위군 ▲▲▲▲▲ 조성사업 (▶▶읍 □□리)	-	-	52,272	-	부	♠♠♠♠과	
▽▽ 하상정비사업	▶▶읍 ++리	0.7km	1,168	-	7,260,000	부	♠♠♠♠과
	■■면 **리	9.2km	2,362	-	3,240,000	부	

* 군위군 ▲▲▲▲▲ 조성사업에서 인근 현장까지 거리

따라서 위 공사중 착공시기가 가장 빠른 군위군 ♠♠♠♠과에서는 52,272m³의 순성토에 대하여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정보를 입력하지 않아 다른 건설공사에 효율적으로 활용되지 못함으로 인하여 10,500,000원(제경비포함)의 예산 낭비를 초래하였다.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농어촌정비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농어촌관광휴양지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보전이 필요한 지역과 난개발이 우려되어 환경보전을 고려한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시행되는 개발사업과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및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개발사업을 하려는 자는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59조 및 [별표 4]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종류, 범위 및 협의시기”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 제2호에 따른 보전관리지역에서 사업계획 면적이 5,000㎡ 이상인 경우 사업의 허가·인가·승인·면허·결정 또는 지정 등(이하 승인등)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하고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군위군 ◆◆과에서는 2020. 10. 8. BD으로부터 군위군 ♥♥면 □□리 e번지 외 3필지 상의 관광농원개발 사업계획 승인 신청을 받아 2020. 10. 15. 군위군 ◁◁◁과 등 관련부서에 개발행위허가 등 협의와 환경영향평가법 등 관련법의 검토를 의뢰하였고,

군위군 ◁◁◁과에서는 사업계획 면적이 영농체험시설 2,020㎡를 포함하여 7,000㎡이므로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에 의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사업승인 전 환경영향평가서를 작성하여 승인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함을 2020. 11. 2. 회신하였다.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사업자에게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 제출을 요구하는 등의 조치없이 2020. 11. 9. 사업계획을 승인하였다.

그 결과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지 않음으로써 환경기준의 유지 및 환경의 보존을 담보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군위군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

경 상 북 도

주 의 요 구

제 목	시설공사 하자검사 부적정
소 관 청	군위군
관 계 부 서	△△과
내 용	

군위군 △△과에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계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에 따르면 계약담당자는 담보책임의 존속기간 중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를 검사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검사하게 하도록 되어 있고, 하자검사를 하는 자는 계약금액이 3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하자검사조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3장 제10절에 따르면 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만료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자는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따로 최종검사를 해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하자검사에 입회해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시설공사 등의 하자담보책임기간 중에는 연 2회 이상 정기적으로 하자검사를 하여야 하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기 14일 전부터 만료일까지의 기간 중에 최종검사를 실시하고 하자검사 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그런데 군위군 △△과에서는 2015. 12. 10.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하자검사 시행” 공문을 시행하여 소속 공무원에게 사무를 위임하여 하자검사를 실시하도록

하였으나, 이후 하자검사를 실시하거나 소속 공무원에게 하자검사 사무를 위임하지 않았다.

그 결과 2018. 1. 1. 이후 하자검사 대상 시설공사 1,942건 중 27건 만을 해당 관리부서에서 자체적으로 하자검사를 실시하였고, 1,915건에 달하는 시설공사가 준공 이후 정기적인 하자검사 및 하자보증기간이 만료되는 공중에 대한 최종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하자 발생 여부의 확인도 할 수 없으며, 하자담보책임기간이 만료되어 하자보수를 요구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하여 예산을 낭비할 우려가 있게 되었다.

조치할 사항 균위균수는

- ① 앞으로는 동일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주의)